

#### [서식 예] 대여금 등 청구의 소(물품대금과 대여금)

# 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〉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# 대여금 등 청구의 소

#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
  - 가. 1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.
  - 나. 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

각 지급하라.
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

- 1. 원고는 가구를 제작·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00. O. O. 피고에게 책상 1각 및 의자 1각을 판매하였으나, 그 물품대금 1,000,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와 피고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피고의 요청으로 2000. O. O. 5.000,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습니다.
- 2. 그 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1,000,000원과 위 대여금 5,000,000원의 합계 6,000,000원을 20 ○ ○ ○ 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교부받았으나, 피고는 지금까지도 위 물품대금 및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3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1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○. ○○.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 위 대여금 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○○. ○○.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#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물품인수증

1. 갑 제2호증 지불각서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#### ㅇㅇ지방법원 귀중



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부수	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절차 및 기 간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#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●●●분류표시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